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인권침해 사안신고 및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,

이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사건의 조사방법·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신설(안 제8조제3항, 제5항)

- 인권침해의 유형별 현황, 피해학생 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,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
나.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방법, 절차 신설(안 제8조의2)

-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, 자료제출 취지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 통지
-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13. ~ 8. 23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, “제1항 각 호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의 유형별 현황
2.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 현황
3.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 현황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되,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,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조사의 방법과 절차)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 받

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경우 그 취지와 제출일자, 요구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실태조사) ①·② (생략)	제8조(실태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	<u>1.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의 유형별 현황</u>
	<u>2.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특 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 치 현황</u>
	<u>3.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 한 조치 현황</u>
	<u>4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특수 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③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 법으로 시행하되,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 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는 전수조사(全數調査)의 방법 으로 시행할 수 있다.</u>	<u>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-</u> ----- ----- <u>제1항부터 제3</u> <u>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</u>

<신 설>

조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되,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,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의2(조사의 방법과 절차) ①

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경우 그 취지와 제출일자, 요구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-6560